오룡지구 한국아델리움 위너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5.1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연수 등의 명칭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무안군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7항에 의거 전매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무안군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주지역지 확대해서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가는 전매제한 기간 1개월 이전 계약 체결 기준 및 기한 전매일로 지정, 광주광역시 지역 주택 기준 선정하였으며 주택공급 신청하기 전 반드시 분양가 및 기한 전매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자 취소된 자는 당첨임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기입한 총 예치금액이 청약 지역에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정한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이면 청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예금 최저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음. 이는 시장주택 지역 주택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은 전체 청약예금 예치금의 20%임.

■ 인접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관련)

구분	무안군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인접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한정 없이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지역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지역
민영주택	무안군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1순위	전주택형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시장·군수·구청장 정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아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의 경우 :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정 청약일 날짜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신청 가능 인정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납입한 자
		2순위	전주택형	3) 청약저축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제1순위자로 청약주택 청약일 전일까지 납입인정회수가 24회 이상인 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전주택형	4) 청약부금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정 청약일 날짜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청약 가능
				5)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6) 청약부금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4순위	전주택형	7)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8) 청약부금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5순위	전주택형	9)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10) 청약부금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6순위	전주택형	11)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12) 청약부금 가입자로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기준 청약예금 최저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8.) 현재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중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의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신청 자격이 있음. 다만, 수도권에서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분양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자 및 계약자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여부 조사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
(1) 총량제한 청약신청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이외 지역 거주자 중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